

참고 1

가축질병 방역조치 위반시 조치사항

위반사항	관련법령	조치사항
○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수의사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	·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○살처분 명령 위반	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	·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○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3항	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○축산차량 미등록,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의3 제1항 및 제2항	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· 과태료 500만원 이하
○축산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작동토록 미조치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의3 제3항	· 과태료 500만원 이하
○역학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회피한 자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3항	· 300만원 이하의 벌금
○가축거래기록 작성·보존 위반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1항	· 과태료 500만원 이하
○소독설비 미구비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	· 과태료 500만원 이하
○가축방역관 검사 및 예찰 방해	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제4항	· 과태료 300만원 이하
○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	· 과태료 300만원 이하
○가축사육시설 가축소유자, 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업 부하장, 계란집하장, 비료제조업 소독 미실시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	· 과태료 300만원 이하
○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및 거짓 기재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6항	· 과태료 300만원 이하
○출입기록부 미작성 및 거짓 기재 - 무선인식 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미확인 - 소독실시 여부 미확인 등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의2 제1항	· 과태료 300만원 이하
○남은 음식을 사료로 사용한 자	사료관리법 제14조 제2항	·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○백신접종명령 위반	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	· 과태료 500만원 이하